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순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5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8.

발의자 : 김순례 · 신보라 · 김선동

원유철 · 서청원 · 이종명

정유섭 · 윤영석 · 홍문종

이명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'17.12.19. 개정, '19.7.1. 시행)으로 '장애 등급' 이란 용어가 '장애 정도'로 변경됨에 따라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'중증장애인'의 정의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,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”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중 종전의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비율계산 등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5.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 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 급에 해당하는 장애인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<삭 제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